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기관사업

Public Institution Evaluation

Welcome to the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PIMAC) at the KDI, a gatekeeper to public procurement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jects in Korea!

1. 개요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 투자를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2011년 상반기부터 시행하였으며, 2016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였음.

2. 대상사업

1 대상사업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하여 실시함.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 등을 포함함.

2 면제사업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6.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7.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가.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3. 수행체계

각 공공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1,000억이상,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의 합이 500억이상인 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의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되는 전년도 1월말 또는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함.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청된 계획서를 검토하고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함. 공공기관은 실시가 결정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4개월을 원칙으로 함.

사업추진 절차	관련 기관	주요내용
사업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규모, 사업기간, 총사업비 추정 등 사업계획(안) 마련 • 사전용역결과 등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이상인 사업 • 사업계획(안) 제출: 사업시행 전년도 1월말 또는 6월말
대상사업 검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타 세부시행 계획에서 정한 면제사유 해당 여부 등 검토 (재정 예타대상, 시설 안전성 확보 등)
실시 및 면제대상 통보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KDI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 의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KDI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의 평가방법론 적용
조사 결과 통보	KDI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산 편성	공공기관	해당사업의 예산편성 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

4. 분석내용

1 평가부문

사업타당성 평가는 공공성 및 수익성 평가로 이루어지며,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에 세부 평가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국내 사업의 공공성 평가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하며, 수익성 평가에서는 재무성과 재무안정성을 평가함. 반면, 해외사업의 공공성 평가에서는 정책적 타당성 및 국내경제 파급효과를 평가하며, 수익성 평가에서는 재무성, 재무안정성 및 해외사업 위험도를 평가함.

2 공공성평가: 경제성평가와 정책적 타당성평가로 구성

-경제성 평가는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을 지칭하며, 이를 위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사회경제적·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하며, 해외사업 평가에서는 경제성 평가를 제외함.

-정책적 타당성평가는 국내사업의 경우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합치성',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환경성' 및 '지역균형발전효과' 등을 평가하며, 해외사업의 경우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합치성',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수출·고용/자원확보 효과' 및 '기관경쟁력 제고효과' 등에 대해 평가함.

3 수익성평가: 개별사업의 재무성 및 재무안정성으로 구성

-재무성평가는 수익성 지수법은 활용함. 수익성 지수법(Profitability Index Method: PI)은 경제성분석의 비용편익분석과 달리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금액을 현금유출의 현재가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함.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면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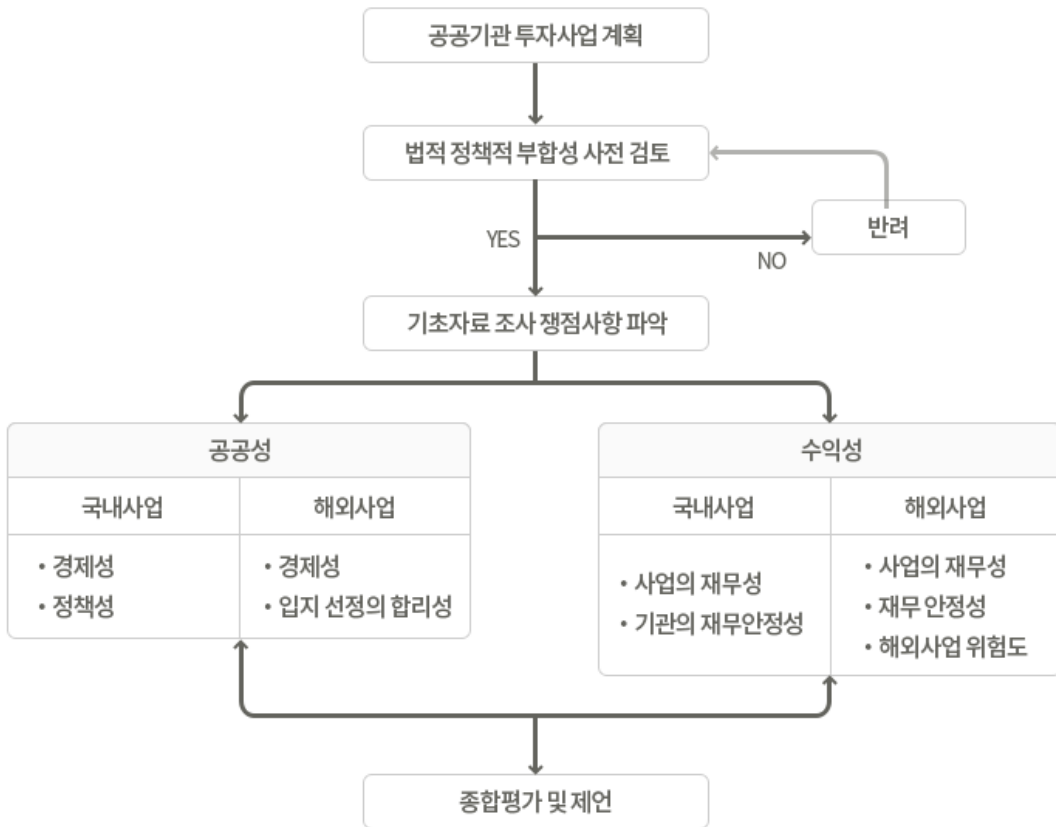
-재무안정성평가는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중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차입금 의존율 등을 활용하며, 해외사업에서는 국가위험도 및 환위험을 추가로 평가

4. 분석내용

4 종합평가

-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흐름도



5. 수행현황

<표 2>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연도별 수행 사업 수

구분	건축	공항	발전	발전 및 설비	부지 개발	산단	산업 단지	수자원	자원 개발	택지 개발	항만	기타	총 합계
1				3		2				3	2	6	16
2	3			12							1	2	18
3	2			8		3				2	5	3	23
4	1			4		6				2	1		14
5				5		8			1	2	3	1	20
6	4	2	1	9	1	1	1	1	1	1		3	25
총 합계	10	2	1	41	1	20	1	1	2	10	12	15	116

2016.12.31. 기준

<표 3>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구분	예타시행	AHP ≥ 0.5 (A)	AHP ≥ 0.5 (B)	철회	조사중	A/(A+B)
전체	116건	48	20	23	25	70.6%
국내사업	90건	41	13	11	25	75.9%
해외사업	26건	7	7	12	0	50.0%

2016.12.31. 기준